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4 선고 2022나369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4 선고 2022나36996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17 선고 2020가단14533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진(소송구조)

변론종결 2023. 6. 15.

판결선고 2023. 9. 14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17. 선고 2020가단14533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,862,7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,862,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의 “가액배상의 방법” 부분을 “가액배상의 방법”으로 고쳐 쓰고,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추가 판단]

피고는, 이 사건 제1, 2부동산에 설정된 2016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9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만 ‘F’에서 ‘피고’로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5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9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, 근저당권자가 동일한 사실, 2016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같은 날 2019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용상태, 변제자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‘채무자’가 서로

달라 위 각 등기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동일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019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6. 8. 9.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무자만 변경등기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미옥, 판사 홍순옥, 판사 이영훈

부동산 목록

1. 충청남도 공주시 대 215㎡

2. 충청남도 공주시

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공주시

시엔트백플로 슬래브지붕단층주택 48.6㎡

부속건물

시엔트백플로슬래브지붕단층창고 9.91㎡

3. 충청남도 공주시 전 496㎡ 글.

